

인천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가단2082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조준상, 이창선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20. 6.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6. 접수 제3124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6. 11.경 원고와 사이에 B의 C은행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1. 6. 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20. 8. 12.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12. 7.경 C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원리금 18,094,2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21. 1. 29.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금 18,050,138원과 지연손해금 221,063원을 합한 18,271,201원이다.

라. B은 1997. 8.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0. 5. 29.경 협의이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의 2020. 6. 20.자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20. 7. 6.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을 야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약 13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을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9.경부터 위 협의이혼 당시까지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함으로써 가정경제에 기여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피고의 위와 같은 기여 또한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